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9. 13.(일)

한국 정부, 중국투자자 '펑젠 민'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 승소

- 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2년 전 원 중재 승소 판정 확정 -
- 최초 약 2조 원·최종 약 2,641억 원 배상 청구 전부 방어 -

- 대한민국 정부는 어제(9. 12. 토) 새벽 05:25경(한국시간) 중국인 펑젠 민(Fengzhen Min, '청구인')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 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결정 및 '청구인은 한국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 사건은 2007.경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중국 소재 건물 매입자금 3,800억 원을 국내 금융기관의 PF 대출로 조달한 청구인이, ▲대출 연체에 따른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회사 주식 매각)을 다룬 민사소송과, ▲위 대출 당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대한 금품 공여 등에 관한 수사·형사재판 등이 韓-中 투자협정에 위반된다"며 2020. 8. ISDS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정부는 2024. 5. 31. 원 중재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승소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9. 28. ICSID에 원 중재 판정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 청구액 최초 약 2조 원, 최종 약 2,641억 원
 - 법무부는 약 2년간 관계부처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과 함께 ICSID 취소위원회를 설득한 끝에 청구인 측 취소신청도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 본건은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한국의 민·형사 사법 절차 및 그 결과가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사건으로,
 - 정부는 원 중재와 취소절차에서 모두 완승하여,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등과 긴밀히 협업하며 관련 후속조치에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국익을 보호하겠습니다.

1. 개요

- 한국 정부는 중국 국적의 투자자 평전 민(이하 ‘청구인’)이 韓-中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2020. 8. 3.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이하 ‘평전 민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9. 12. 05:25(한국시간) 대한민국의 전부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 2007. 12. 1.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으로, 양국 투자자의 상대국 내 투자 보호와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등을 규정한 양자간 투자협정(BIT)입니다.

- 본 사건의 청구인은 중국 소재 화푸빌딩(청구인 주장 시가 약 1조 5,000억 원) 매입을 위한 PF 대출을 받기 위해 (주)백익인베스트먼트[이하 ‘파이코리아 (Pi Korea)’]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대출을 받은 사람입니다.

- 이후 청구인이 대출을 연체하자 금융기관은 담보로 받은 위 회사 주식을 처분(담보권 실행)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 한편 이와 별도로 진행된 수사·형사재판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의 금융기관 임직원 에 대한 금품 공여 등이 확인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청구인은 위 담보권 실행·민사재판과 수사·형사재판 등을 문제삼아 ISDS를 제기했습니다. ※ 청구액(소가) : 최초 약 2조 원, 최종 약 2,641억 원

- 2024. 5. 원 중재판정부는 “파이코리아는 금품 공여 등을 통해 부당 PF 대출을 받고자 설립된 것으로, 청구인의 위 회사 설립 및 주식 취득은 불법적인 투자로서 협정상 보호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 ▲ ‘위 투자는 협정상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 청구인에게 정부의 소송비용 약 49억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한 바 있습니다.

※ 2024. 6. 2.자 보도자료 - “중국투자자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참고

- 청구인은 2024. 9. 28.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하였고, 어제(9. 12.) 05:25 (한국시간 기준, 美동부시간 9. 11.(금) 16:25) ICSID 취소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을 전부 기각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청구인에게 정부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1,283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2. 주요 경과 ※ 이하 한국시간 기준 / 구체적 경과는 별첨 참조

- 2020. 8. 3. 중재신청서 접수
- 2024. 5. 31. 중재판정 선고 (정부 승소)
- 2024. 9. 28. 청구인 측, ICSID에 판정 취소신청 제기
- 2025. 3. 26. ~ 11. 6. 취소절차 서면 공방
- 2026. 2. 25. ~ 26. 취소절차 구술심리 진행 (싱가포르)
- 2026. 9. 12. 취소위원회, 취소신청 전부 기각 (정부 승소)

3. 취소위원회 결정의 요지

배경 및 원 중재판정 요지

- (이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동업자와 중국 북경 소재 화푸빌딩 매입·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빌딩 매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07. 10.경 국내에 ‘파이코리아(Pi Korea)’(이하 ‘위 회사’)를 설립 후 국내 A은행이 주선·지급보증한 2건의 대출을 통해 3,800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 (대출금 연체와 담보권 실행) 위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은행은 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대출채권을 인수 후 수차례 기한을 연장해 주었으나 끝내 변제받지 못했고, 이에 2011.경 담보권 실행에 착수하여, 담보로 받은 위 회사 주식을 2014.~2015.경 매각하였습니다.
 - (민사재판) 청구인은 위 담보권 실행을 다투며 2013. 7.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7.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 (수사·형사재판) 청구인이 위 대출 과정에서 A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이익을 약속·공여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2017. 3.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자신이 보유한 위 회사의 주식을 A은행이 매각한 행위, ▲위 민사재판과 수사·형사재판 등이 ▲위법한 수용, ▲사법거부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대한민국의 한-중 투자협정 위반 내용]

- ▲ **위법한 수용** : A은행의 담보권 실행 및 그로 인한 주식 이전의 효력을 인정한 한국 민사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파이코리아 주식을 부당하게 박탈당하였다는 주장
- ▲ **사법거부** : 한국 민사재판에서 주식 매매계약서 등 핵심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이 배척되고 자신의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
- ▲ **공정공평대우 위반** : 민사재판의 부당한 판단과 수사·형사재판에서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포함한 일련의 조치가 부당하였다는 주장

○ **(정부의 주장)** 정부는 청구인의 파이코리아 설립 및 주식 취득이 A은행 임직원에게 대한 금품 공여로 대출을 조달하려는 불법적 계획의 일부이므로, 해당 주식은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A은행의 담보권 실행은 한국 정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않으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하였음

○ **(원 중재 결과 : 전부 승소)** 원 중재판정부는 2024. 5. 31. 정부의 ‘투자의 불법성’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파이코리아(Pi Korea)’ 설립 및 주식 취득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대한 금품 공여로 대출을 조달하려는 불법적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로서 위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판정부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부의 소송 비용 약 49억 1,260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취소절차에서 양측 주장 요지

□ ICSID 협약상 중재판정의 취소 사유는 다섯 가지로 한정

- ICSID 판정 취소절차는 원 판정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항소절차가 아니라, ICSID 협약 제52조에 규정된 다섯 가지의 제한적 사유가 있는 때에만 판정을 취소하는 절차로서,
 - ① 중재판정부 구성의 흠결, ②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逾越), ③ 중재인의 부패, ④ 근본적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또는 ⑤ 이유 불비(不備)의 취소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청구인 핑젠 민 (Fengzhen Min) 측 주장

- 취소절차에서 청구인은 원 판정에 아래와 같은 ICSID 협약 제52조상 세 가지 취소 사유가 있으므로 원 판정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① 청구인이 파이코리아(Pi Korea)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에도, 원 판정부는 한-중 투자협정과 국내법을 잘못 해석·적용하여 이를 ‘불법 투자’로 보아 관할권을 부당하게 부정하였음 (명백한 권한 유월)
- ② 원 판정부는 투자의 불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입증정도의 기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핵심 쟁점에 관하여 충분한 변론기회도 보장하지 않았음 (근본적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 ③ 원 판정부는 한-중 투자협정의 문언을 한국 정부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확장 해석하고도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모순된 이유를 제시하는 등 판정 이유를 누락하였음 (이유불비)

□ 한국 정부의 주장

- 이에 대해 정부는 ▲ 청구인은 원 판정부의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을 뒤집고자 취소신청을 함으로써, 취소절차를 ‘항소’ 제도로 오용하고 있고, ▲ 원 판정에는 취소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정부는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 ① 원 판정부는 한-중 투자협정과 국내법을 제대로 해석·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해석상 이견은 ‘판정부의 권한 유월’이라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부의 권한 준수)
- ② 판정문에 입증정도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는 근본적인 절차 규칙은 없고, 원 판정부는 청구인에게 투자의 불법성에 대한 충분한 방어 기회를 주었으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투자의 불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였음 (절차규칙 준수)

- ③ 원 판정부는 정부가 제출한 판결문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파이코리아(Pi Korea) 설립과 주식 취득 경위, ▲부당 PF 대출 과정, ▲대출 관련 금품 공여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투자협정 해석론을 검토하여 관할권을 부정한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였음 (이유불비 없음)

취소위원회 결정 요지

□ 약 2년간 치열한 공방 및 심리 끝에, ICSID 취소위원회는 2026. 9. 12.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취소위원회의 주요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원 판정부의 한-중 투자협정 해석은 문언에 근거한 합리적인 것으로서, 청구인이 파이코리아를 설립할 당시 그 주식을 위법한 대출 조달 계획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과정에도 명백한 권한유월이 없음(⇒ 명백한 권한 유월 부존재)
- ② 원 판정부는 특정법위반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특정한 후, 수사기록 등 증거의 신빙성·관련성·증명력을 모두 검토하여 투자의 불법성을 판단하였으므로 입증기준을 무시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충분한 변론기회도 보장되었음 (⇒ 근본적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부존재)
- ③ 원 판정부는 증거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였고, 투자협정의 해석론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할권을 부정한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는 등 판정의 논리 전개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이유의 누락·모순이 없음 (⇒ 이유불비 없음)

○ 이에 따라, 한국이 승소한 원 중재판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또한 취소위원회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1,28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취소결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정부에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 청구인이 취소절차 중재비용 426,751.11달러(약 5억 7,300만 원)도 전부 부담 (ICSID에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4. 의의 및 향후 계획

□ '위법한 투자는 보호 不可' 원칙 확인

- 이번 취소결정으로, 원 중재에서 판정한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공고히 하였습니다.
- 또한 본건은 한국의 민·형사상 사법절차에서 이미 판단된 사건을 ISDS를 통해 뒤집으려는 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냈습니다.

□ 최초의 승리, 최종적 완승

- 원 중재판정은 우리 정부가 ISDS 사건에서 본안 심리절차까지 수행하여 최초로 승소한 사건으로, 이번 취소절차에서도 완승함으로써 청구인의 2차 중재 가능성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업하며 방대한 기록과 증거를 분석하여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 승소한 원 판정을 지켜냄으로써 약 2조 원 상당의 국부 유출을 막아냈습니다.

* 법무법인 율촌, A&O Shearman 및 Matthew Hodgson

□ 향후 계획

- 정부는 향후 소송비용 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청구인 측과 협의하여 취소결정문 등을 최대한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윤영주	(044-200-2190)
		담당자	사무관	임만혁	(044-200-2192)
담당부서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과	책임자	과 장	문기영	(044-215-7630)
		담당자	사무관	남궁향	(044-215-7632)
담당부서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	책임자	과 장	주은혜	(02-2100-7716)
		담당자	사무관	최영재	(02-2100-7719)
담당부서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책임자	과 장	조아라	(02-2110-3331)
		담당자	검 사	양준열	(02-2110-4321)
담당부서	산업통상부 통상분쟁대응과	책임자	과 장 (직무대리)	한주실	(044-203-5940)
		담당자	사무관	박경은	(044-203-5952)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전은주	(02-2100-2910)
		담당자	사무관	김미애	(02-2100-2914)

※ 한국 시간 기준

주요 절차	일자	주요 내용
사건 배경		
국내 회사 설립	2007. 10. 30.	청구인, 화푸빌딩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파이코리아 설립
대출 실행	2007. 12. - 2008. 1.	파이코리아, 금융기관으로부터 함께 3,800억 원 차입 ※ A은행 주선·지급보증, 이후 대출채권 양수
담보권 실행	2011. 8. - 2015. 1.	A은행,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담보로 받은 파이코리아 주식에 대한 담보권 실행(제3자 매각)
형사판결 확정	2017. 3. 22.	청구인, 대출 과정에서의 A은행 임직원에게 대한 금품 공여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민사판결 확정	2017. 7. 18.	청구인, 위 담보권 실행을 다투며 제기한 민사소송(2013. 7. 제기) 패소(대법원)
원 중재 절차		
중재의향서 접수	2020. 3. 18.	청구인, 중재의향서 접수
중재신청서 접수	2020. 8. 3.	청구인, 중재신청서 ICSID 등록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2021. 2. 1.	의장중재인 Ian Glick (영국) 정부 지명 Donald McRae (캐나다·뉴질랜드) 청구인 지명 Stephen Drymer (캐나다)
서면 심리	2021. 2. - 2023. 9.	양측 본안 서면 공방 및 문서제출절차 진행
구술심리	2023. 11. 13.-20.	구술심리 진행(싱가포르) - 증인신문, 관할/본안 변론, 최종변론
판정 선고	2024. 5. 31.	중재판정부,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 선고 ※ 정부 소송비용 약 49억 원 보전 판정
판정 취소절차		
취소신청 제기	2024. 9. 28.	청구인, ICSID에 취소신청서 제출
취소위원회 구성 완료	2024. 11. 8.	ICSID, 취소위원회 구성 완료 통보 - 취소위원장 Cavinder Bull (싱가포르) - 취소위원 David Pawlak (아일랜드·미국) - 취소위원 Mairée Urán Bidegain (콜롬비아·프랑스·우루과이)
서면 심리	2025. 3.-11.	양측 서면 공방
구술심리	2026. 2. 25.-26.	취소절차 구술심리 개최 (싱가포르)
절차종료선언	2026. 8. 11.	취소위원회, 절차종료선언
취소결정 선고	2026. 9. 12.	취소위원회, 취소 기각 결정 선고 (대한민국 승소)